고 충 처 리 위 원 회 세 칙

2007년 1월 29일 제정 2009년 9월 9일 개정 2011년 12월 13일 개정 2015년 12월 17일 개정
2019년 3월 13일 개정 2020년 3월 18일 개정 2022년 4월 5일 개정

<table>
<tr><th>현 행 안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명칭)
본 세칙은 현대위아지회(이하 "지회") 규칙 제24조(고충처리위원회) 의거하여 고충처리 위원회 세칙으로 제정한다.

제2조 (목적)
본 세칙은 고충처리위원회의 조합원과의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

제3조 (구성)
지회장과 지회장이 임명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

제4조 (기능)
1. 조합원과 상담 고충 내용파악.
2. 조합원의 고충처리
1) 고충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것에 아무런 제한도 가하지 않는다.
2) 고충이 노사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노사협의회에 위촉한다.
3) 인사에 관한 사항.
4) 고충처리는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.

제 2 장 부 칙

제5조 (시행)
본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6조 (제정과 개정)
본 세칙의 제정과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.

제7조 (통상관례)
본 세칙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

</td><td></td></tr>
</table>